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등 >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91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개정안 발의배경 검토	4
2. 개정안 주요내용	7
1) 교육시설 개방 및 책임 특례	7
2) 교육시설지원기관 신설	13
3)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교육시설안전공단 개편	19
(1) 명칭 및 사업 변경 등	19
(2) 체제 개편	25
(3) 관리·감독 강화	3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6. 1.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안전인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함)을 중심으로 하는 공제사업 및 위탁업무 수행 등 교육시설 관리의 기본 체계로서 기능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수요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확대 등으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육시설 개방에 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장이 개방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전문 시설관리 업무의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 현장의 시설관리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안전원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교육시설 정책환경의 종합적이고 확장된 역할을 반영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와 민·형사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범위 확대,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 운영평가 및 조직역량 진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시설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교육시설 관리체계의 정비 및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의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방 중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책임 특례를 신설하며, 감독기관의 장이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나.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을 ‘교육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안전원에서 확장된 공단의 사업을 규정하며, 법인 성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기존의 총회를 폐지하여 이사회 중심의 전문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함(안 제35조부터 제50조까지 등).

라. 교육부장관이 공단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조직역량 진단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함(안 제45조 및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발의배경 검토

□ 최근 5년간(2021~2025) 교육시설¹⁾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운동장 개방은 2021년 78.9%에서 2025년 81.7%, 체육관 개방은 2021년 67.9%에서 2025년 75.4% 등으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임.

또한 폐교 수도 2021년 24개교에서 2025년 49개교로 증가하여 5년간 158개교가 폐교되었으나, 매각된 9개교를 제외한 149개교 중 51.7%인 77개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시설과 폐교 등에 대한 체계적·전문적인 운영·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시설 개방 현황]

(단위: 개소, %)

학교급	운동장			체육관			강당			시청각실		
	보유	개방	개방율	보유	개방	개방율	보유	개방	개방율	보유	개방	개방율
2021	11,430	9,021	78.9	7,466	5,067	67.9	4,396	2,469	56.2	4,731	2,272	48.0
2022	11,363	8,992	79.1	7,769	5,240	67.4	4,381	2,347	53.6	4,732	2,182	46.1
2023	11,392	9,518	83.5	8,033	5,990	74.6	4,355	2,582	59.3	4,788	2,159	45.1
2024	11,587	9,555	82.5	8,300	6,235	75.1	4,243	2,476	58.4	4,887	2,050	41.9
2025	11,433	9,346	81.7	8,393	6,329	75.4	4,153	2,421	58.3	4,934	1,929	39.1

주: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기준(고등교육기관 제외)

자료: 교육부

1) 「교육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폐교 및 폐교 활용 현황]

(단위: 개교, %)

년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폐교 수	24	27	20	38	49	158

구분	활용			미활용	합계
	대부(임대)	자체활용	소계		
폐교 수 (비율)	16 (10.7)	56 (37.6)	72 (48.3)	77 (51.7)	149 (100.0)

주: 1. 158개교 중 9개교는 매각되어 현재 보유는 149교임

2. 폐교 활용은 2025.3.1. 기준

자료: 교육부

□ 한편, 교육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시설 개방으로 가중된 학교 업무 부담의 효율적 관리 여부와 관련 하여, 적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53.1%(전혀 그렇지 않다 28.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5.0%), 적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이 19.8%(매우 그렇다 2.9%, 그렇다 16.9%)로 나타났고,

학교시설 개방·관리와 관련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 기준 정비(25.8%), 전문인력 확보·배치(22.2%), 유지관리 등 관리 체계 변화(18.8%)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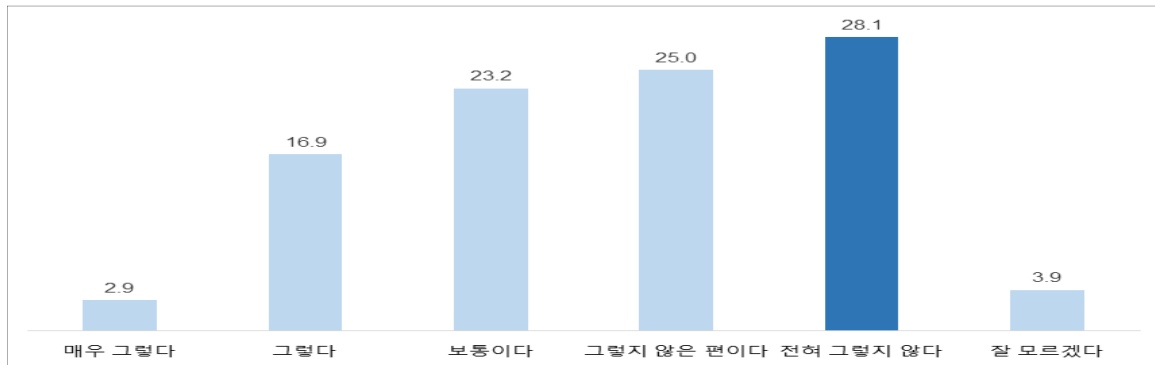
학교 현장에서 학교시설 개방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시설 관련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 용
조사대상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조사기간	2025.9.15. ~ 2025.10.2 (3주간)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내용	교육시설 운영 현황, 시설 관리체계 인식, 개선 필요사항, 공단 설립 필요성 등
유효표본	50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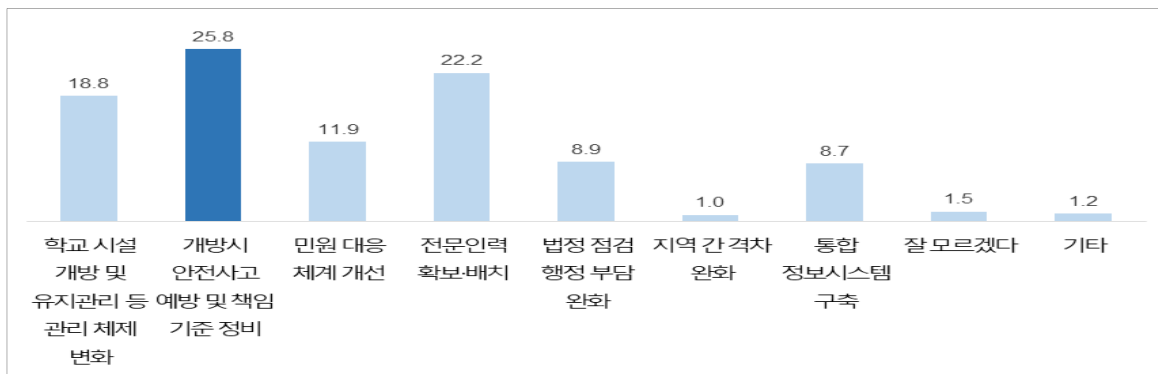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 학교시설 개방으로 가중된 학교업무 부담의 효율적 관리 여부



자료: 교육부

* 학교시설 개방·관리시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과제



자료: 교육부

□ 이에 개정안은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근거와 민·형사상 책임 특례를 규정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을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법인 성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 체계로 전환하며 총회를 폐지하여 이사회 중심의 전문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하면서,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교육시설 관리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1) 교육시설 개방 및 책임 특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시설의 장이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와 교육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감독기관의 장이 교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교육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5(교육시설의 개방 및 책임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은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u>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공제 또는 보험 가입, 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방의 범위·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① 교육시설 개방 근거 마련

- 현행법상 교육시설 개방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살펴보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국민이 초·중등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범위와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고²⁾ 이를 근거로 개방되고 있음.
- 개정안은 제10조의5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1조를 인용하면서 교육시설의 개방 근거를 규정함. 이는 안 제33조의2에서 교육감이 교육시설 개방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5조 등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개편한 교육시설안전공단이 교육시설 개방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시설 개방에 대한 내용을

2)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라 함)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② 교육시설 이용 중 사고 면책 근거 마련

□ 개정안은 제10조의5제2항에서 교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교육시설의 장이 해당 교육시설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³⁾ 「형법」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과실인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⁴⁾ 고의 또는 특정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은 교육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을 「교육시설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어,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개방으로 갖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현행법에서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 면책을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체육진흥법」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그러나 해당 법률은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한정하여 ‘민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체육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⁶⁾ 이용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규정될 필요가 있음.

□ 다만 교육시설 이용에 대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서 교육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에서 교육시설지원기관(안 제33조의2제2항제3호)과

5)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교육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교육시설안전공단(안 제36조제1항제17호)의 사업으로 규정한 학교
복합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이라함)」에 규정되어 있음.⁷⁾

③ 교육시설 개방 관련 필요 사항 위임

- 개정안은 제10조의5제4항에서 교육시설의 개방 범위, 절차 등 필
요한 사항을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교육시설 개방에 대한 내용을 관
할 교육시설에 맞게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초·중등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범위와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도 교육규칙에서 초·중등 교육시설의 개방 범위
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교육시설의 개방 범
위, 절차 등에 대한 위임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
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육시설 개방과
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개방을 도모

7) 「학교복합시설법」

제6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
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기 위하여 면책 특례 적용 대상을 실무 담당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 교육청,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 시설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 미약하며, 사립학교 교육시설 개방은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교육시설지원기관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시설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시설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3조의2(교육시설지원기관) ① 교육감은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 2.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 등에 관한 업무 3.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 관리 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학교 시설관리업무의 부담 경감 및 지원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업 ③ 교육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① 교육시설지원기관 설치 또는 지정·운영 근거 마련

- 개정안은 제33조의2제1항에서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지원기관을 통해 교육시설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정안은 제33조의2제2항에서 지원기관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규정된 (제1호)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제2호)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 등에 관한 업무, (제3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제4호)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는 현재 개별학교, 교육청 등이 직접수행하고 있음.

□ 해당 업무를 개정안에 근거하여 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경우, 지원기관이 교육시설 관련 업무의 주체가 되어 개별학교의 대응 부담 및 책임이 완화되고, 전문 기술인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인력 활용도가 제고되며, 소규모 보수공사, 시설점검 용역 등을 통합 발주하여 관리비용 및 행정비용 등이 절감되는 한편, 개방시설별(체육관, 운동장, 학교복합시설 등)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된 방식의 운영이 가능하여, 교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33조의2제2항 지원기관의 사업 및 현재 수행 기관]

지원기관의 업무 내용	현재 수행 기관
(제1호)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 학교장의 결정(국립학교)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공·사립 학교)에 따라 국민이 학교시설 등 이용 가능	개별학교 직접수행
(제2호)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 등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시설·설비·교구의 점검 등) : 학교장은 학교의 시설·설비·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 시설·설비·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치 비용 지원 가능	개별학교 직접수행, 필요시 안전원 위탁
(제3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 「학교복합시설법」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지자체, 교육부(국립)· 교육청(공·사립),

지원기관의 업무 내용	현재 수행 기관
: 학교복합시설 설치자(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부장관(국립학교), 교육감(공·사립 학교))가 운영·관리 * 운영관리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운영관리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직접수행 또는 위탁
(제4호)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 「폐교활용법」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 수립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	교육청 직접수행
(제5호) 학교 시설관리업무의 부담 경감 및 지원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업	-

- 개정안에 따른 지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지방공단의 성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해당 의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⁸⁾

8)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84호)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 12. (생략) <신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 <u>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u> 」 제33조의2에 따른 <u>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u> . 이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교육감으로 본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신설>	제2조의2(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 개정안은 제33조의2제3항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원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지원기관을 통한 사업 수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기관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지원기관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에 대한 추계와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② 교육시설지원기관 설치 등 관련 필요 사항 위임

- 개정안은 제33조의2제4항에서 지원기관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관할 교육시설 관리 상황에 맞게 지원기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지원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주체는 교육감이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⁹⁾ 지원기관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례로 정하는 것과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원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과 같이 시·도조례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¹⁰⁾

교육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시설지원기관은 교육감이 재원을 출자·출연하여 독립된 법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 및 대외적 신뢰도 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설치’를 ‘설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시설지원기관을 ‘공단’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과 무관하게 「교육시설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관리책임은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교육시설지원기관 설립을 반대하므로 해당 조항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0)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3)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교육시설안전공단 개편

(1) 명칭 및 사업 변경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교육시설안전공단에서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지원,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지원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관련 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¹¹⁾

현행	개정안
제6장 <u>한국교육시설안전원</u>	제6장 <u>교육시설안전공단</u>
제35조(<u>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u> 설립)	제35조(<u>교육시설안전공단의</u> 설립)
① <u>교육부장관은</u>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u>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u> 을 설립한다.	① <u>교육부장관은</u>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지원,----- ----- ----- <u>교육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u> ----- -----.
② <u>안전원은</u> 법인으로 한다.	② <u>공단은</u> -----.

11) [개정안 조문대비표]가 생략된 부분 중, 제43조(준비금의 적립), 제44조(이익금의 처리), 제4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8조(공무원의 파견), 제4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제2항, 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54조(과태료)는 ‘안전원’을 ‘공단’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49조제3항은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을 ‘지정전문기관, 지원기관 또는 공단’으로 개정하는 내용임.

③ <u>안전원</u>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u>안전원의 사업</u>) ① <u>안전원</u>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13. (생략) 14. <u>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의 개발·보급</u> 15. <u>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u>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6. (생략) ② <u>안전원</u>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 이하 생략)	③ <u>공단</u>은----- ----- ---. 제36조(<u>공단의 사업</u>) ① <u>공단</u>은----- -----. 1. ~ 13. (현행과 같음) 14. <u>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지원, 안전</u>----- ----- 15. <u>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u>----- ----- 16. <u>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u> 17. <u>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u> 18. <u>교육시설 보수 등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u> 19. <u>지원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업무</u> 20. (현행 제16호와 같음) ② <u>공단</u>은----- ----- -----. ③ 제1항제15호에 따른 <u>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 이하 생략)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함)’의 명칭을 ‘교육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변경하고, 제35조제1항 공단의 설립 목적에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제36조제1항 공단의 사업에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① 명칭 및 사업 변경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제6장의 제목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안전원으로 규정된 사항들을 공단으로 규정함.

이는 교육감이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는 지원기관이 지방공단의 성격이므로, 이에 상응하여 중앙공단의 역할을 하는 기관의 명칭도 유사한 체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제36조제1항에서 공단의 사업으로, (제15호)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6호) 폐교재산의 관리·활용, (제17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제18호) 교육시설 보수 등 시설개선 등 지원기관과 유사한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제14호) 교육시

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의 개발·보급, (제19호) 지원기관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등 중앙공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

□ 현행법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피해 복구, 통합정보망 운영 등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던 안전원이 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시설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사업 등을 추가로 수행하게 될 경우, 축적된 업무 실적과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운영 지원이 이루어지는 한편, 지방공단과 같이 통합적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개별학교 또는 교육청이 수행하는 교육시설 관련 사업에 대해, ① 개별학교 또는 교육청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 ② 안 제33조의2에 따라 교육감이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③ 안 제36조에 근거하여 교육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학교 또는 각 시·도 교육청의 수요에 따라 교육시설안전공단과 지원기관 체계의 규모, 운영방식, 소요 재원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의 방향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증가하는 폐교,

교육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는 학교복합시설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선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개정안에 따라 공단에서 교육시설 관련 사업을 지원기관(안 제33조의2제2항)과 유사하게 수행할 경우, 사업 검토, 시설 관리, 안전점검, 공제보상의 전체 과정을 공단이 담당하여 수행자, 감독자, 보상자 등의 역할이 중첩되므로 교육시설 관리의 객관성·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② 개방 관련 사항 정관 위임

- 개정안은 제36조제3항에서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해당 조항은 안전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사업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교육시설법」 제38조(정관)에¹²⁾ 근거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정관」에서는 안전원의 조직과 조직운영에 대한 기본사항 등

12) 「교육시설법」

제38조(정관)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회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조직에 관한 사항 /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안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으며,¹³⁾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시설공제사업 운영규정」, 「배상책임공제사업 운영규정」 등 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음.¹⁴⁾

□ 따라서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 및 내부규정의 체계, 규정하는 내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문에 따르면 교육시설의 개방 주체가 아닌 공단이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완하여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3)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정관」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회원 / 제3장 임원 및 직원 등 / 제4장 총회 / 제5장 이사회 /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7장 보칙

14) 「교육시설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6조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정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시설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상책임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6조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정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중 배상책임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체제 개편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을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변경하면서 법인 성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 체계로 전환하고 총회를 폐지하여 이사회 중심의 전문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함으로써, 교육시설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안전원의 재정) <u>안전원의</u>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u>회원이 내는 회비</u> <u><신 설></u> <u><신 설></u> 2. ~ 4. (생략)	제37조(공단의 재정) <u>공단의</u> ----- ----- ----- <u><삭 제></u> 2. <u>정부의 출연금·보조금</u> 3. <u>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u>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38조(정관) ① <u>안전원의</u>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6. <u>총회에 관한 사항</u> 7. ~ 10. (생략) 11. 그 밖에 <u>안전원의</u> 운영에 필	제38조(정관) ① <u>공단의</u> ----- ----- ----- 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7. ~ 10. (현행과 같음) 11. ----- <u>공단의</u> -----

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총회) ① 안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임면

3. 예산 및 결산

4. 사업계획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0조(임원) ① 안전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와 총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교

② -----이사회의-----

-----.

<삭 제>

제40조(임원) ① 공단에는-----

-----.

② -----

-----이사회-----

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생략)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안전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안전원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생략)

2. 안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

⑦ (생략)

제41조(이사회)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생략)

2. 안전원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3. ~ 5.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단의-----
-----.

⑤ 공단의-----

-----.

⑥ -----공단의-----

-----이사회의-----
-----.

1. (현행과 같음)

2. 공단의-----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공단-----

3. ~ 5. (현행과 같음)

6. <u>총회에 제안할 사항</u> 7. (생략) ③ ~ ⑤ (생략) 제42조(예산 및 결산) ① <u>안전원의</u>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② <u>안전원은</u> 다음 회계연도의 총 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 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u>이사회와 총회의</u> 의 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u>안전원은</u>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하여 <u>이사회와 총회의</u> 의결을 거 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준용) <u>안전원에</u>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u>사단법인에</u>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삭제>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예산 및 결산) ① <u>공단의</u>--- ----- -----. ② <u>공단은</u>----- ----- ----- -----<u>이사회의</u>----- -----. ③ <u>공단은</u>----- ----- ---<u>이사회의</u>----- -----. 제46조(준용) <u>공단에</u>----- ----- -----<u>재단법인에</u>----- -----.
--	---

나. 검토의견

- ☐ 안전원은 1948년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 및 각종 재난예방을 위하여 공립학교 경영자 중심으로 설립된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서 시작되었음.

학교재해복구공제회는 1962년부터 사단법인 체제로 운영되었고, 2004년에 교육연구시설의 재난예방과 재난복구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20년부터 「교육시설법」¹⁵⁾에 근거하여 교육시설종합관리 지원을 전담하는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됨.

이와 같이 안전원은 교육시설의 신속한 피해·재난 복구 지원을 위하여 ‘학교 경영자 중심’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체제를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개정안은 안전원을 공단으로 변경하면서 법인의 성격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 제46조에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개정안에 따라 공단이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영리 또는 비영리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사단법인에서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비영리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는 재단법인으로 개편될 경우, 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15) 「교육시설법」 (법률 제16678호, 2019.12.3. 제정, 2020.12.4. 시행)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교]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구성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법인형태	영리 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비영리 형태만 가능
설립행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정관변경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가관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설립자의 의사
법인해산	임의해산 가능	임의해산 불가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 비영리 재단법인

① 회비 삭제

□ 이러한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제37조에서 공단의 수입 재원으로 '회원이 내는 회비'를 삭제하고 '정부의 출연금·보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을 신설함.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므로, 수입에 출연금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¹⁶⁾

□ 다만 2025년말 기준으로 안전원 수입예산의 41.3%를 공제회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수입 재원에서 회원이 내는 회비(공제회비)를 삭제하면서도,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이외에 공제회비에 상응하는 재원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제급여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 재원의 근거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16)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안전원 수입 및 지출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공제사업	공제회비	33,388 (41.3)	공제급여	35,197 (43.5)
	재난복구준비금	14,000 (17.3)	사업 인건비	9,178 (11.4)
	이자수익	6,880 (8.5)	공제부문 사업비	8,737 (10.8)
	재난예방운영준비금	4,203 (5.2)	일반관리 인건비	3,668 (4.5)
	연구실회비	2,572 (3.2)	관리운영비	3,162 (3.9)
	임대료 등	3,350 (4.1)	영리부문 사업비 등	4,451 (5.5)
	소계	64,393 (79.7)	소계	64,393 (79.7)
수탁사업	용역수수료	16,235 (20.1)	수탁사업비	11,600 (14.4)
	이월금 등	199 (0.2)	사업 인건비 등	4,834 (6.0)
	소계	16,434 (20.3)	소계	16,434 (20.3)
	합계	80,827 (100.0)	합계	80,827 (100.0)

주: 2025.12. 기준

자료: 교육부, 안전원

② 총회 폐지

□ 또한 개정안은 제38조 등에서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던 것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변경함.

이는 사단법인의 사무는 기본적으로 총회의 결의에 따르므로 총회가 필수적인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지만,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재단법인에서는 총회가 존재하지 않고 이사장이 포함된 이사회가 의결기구로 역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임원 임면, 예산 및 결산 등 중요사항은 총회 및 이사회가 아닌 이사회 단독 의결로 수행되는데, 총회가 폐지되고 이사회만 유지될 경우, 구성원 중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규모가 축소되고(전체 시·도교육청 교육감 총 16명 → 4개 권역별 1명으로 총 4명),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한국사립초

중고등학교 단체 임원은 참여하지 못하는 한편, 건축, 회계, 법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게 됨.

□ 총회 폐지는 법인 체제 개편에 부합하도록 개편되는 것이고 이사회 중심 의결구조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총회 폐지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현장의 의견 반영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2026년 9월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려는 취지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¹⁷⁾과 통합하여 ‘(가칭)교육시설 건강안전공단’으로 개편되는 기능개혁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제 개편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회원 중심의 운영구조인 ‘총회’를 폐지하고 공적 책임 및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중심의 조직체제로 재편하여 신속하고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17)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이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총회를 폐지할 경우 시·도 교육청 의견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회비삭제, 총회 폐지 등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시설 안전 및 환경개선 등 각종 공익적 지원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총회와 이사회 비교]

구분	총회	이사회
구성	(법 제39조제1항) • 이사장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	(법 제41조제1항)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법 제40조제1항) * 안전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
	(정관 제22조제1항) - 이사장 - 교육부 정책기획관 - 교육감(16명) - 교육지원청 교육장(176명) -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임원 중에서 같은 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1명 -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임원 중에서 같은 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1명 -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임원 중에서 같은 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1명 ※ 2026.8. 기준 197명	(정관 제10조제3항) -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건축, 회계, 법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3명) - 다음은 당연직 • 교육부 정책기획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시·도교육청 교육시설 공제 또는 안전업무 담당 국장 4명(4개 권역별 1인) ※ 2026.8. 기준 11명
회의	(법 제39조제3항)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총회 소집(의장: 이사장)	(법 제41조제3항)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의장: 이사장) (법 제41조제4항)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의결사항	(법 제39조제2항 및 정관 제23조) • 정관의 변경 • 이사장 및 감사의 임면 • 예산 및 결산 • 사업계획 • 안전원의 해산 •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제안한 중요사항	(법 제41조제2항 및 정관 제27조) • 정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안전원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규칙, 지침 및 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장 정함) • 사업계획 • 임원(이사장, 감사, 이사)의 임면 • 예산 및 결산 • 총회에 제안할 사항 • 공제회비 또는 공제료 등의 결정 및 공제 급여 지급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 안전원 해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교육시설법」,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정관」

(3) 관리·감독 강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공단이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임직원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공단의 전문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의 제고를 위한 조직역량 진단 근거를 신설하여,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5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은 <u>안전원의</u>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안전원의</u>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지도·감독) ① ----- -- <u>공단의</u> ----- ----- --- <u>공단의</u> ----- -----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u>안전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② ----- ----- ----- <u>공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u>
<신설>	③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해

<신 설>

<신 설>

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공단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조직역량 진단) ①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전문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정책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조직역량 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직역량 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진단 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진단의 시기 및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역량 진단 결과 조직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교육부장관의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제45조에서 (제1항 및 제2항) 교육부장관이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공단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은 현행법의 조치에 더하여 (제2항) 교육부장관이 공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임직원에게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4항) 교육부장관이 공단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또한 개정안은 제45조의2에서 (제1항) 교육부장관이 공단으로 하여금 조직역량 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 공단은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직역량 진단을 실시하며, (제3항) 조직역량 진단 결과 조직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공단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은 이를 지체없이 이행한 후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제45조제2항 및 제3항) 개정안에 따라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루어지는 시정과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45조제4항) 공단 운영평가의 경우, 실시 목적과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어떤 경우에 운영평가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제45조의2) 조직역량 진단에 조직의 운영 성과 등이 포함될 경우, 운영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실익이 적을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9